



「우리 내리사랑 적금」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ㆍ상 품 명 : 「우리 내리사랑 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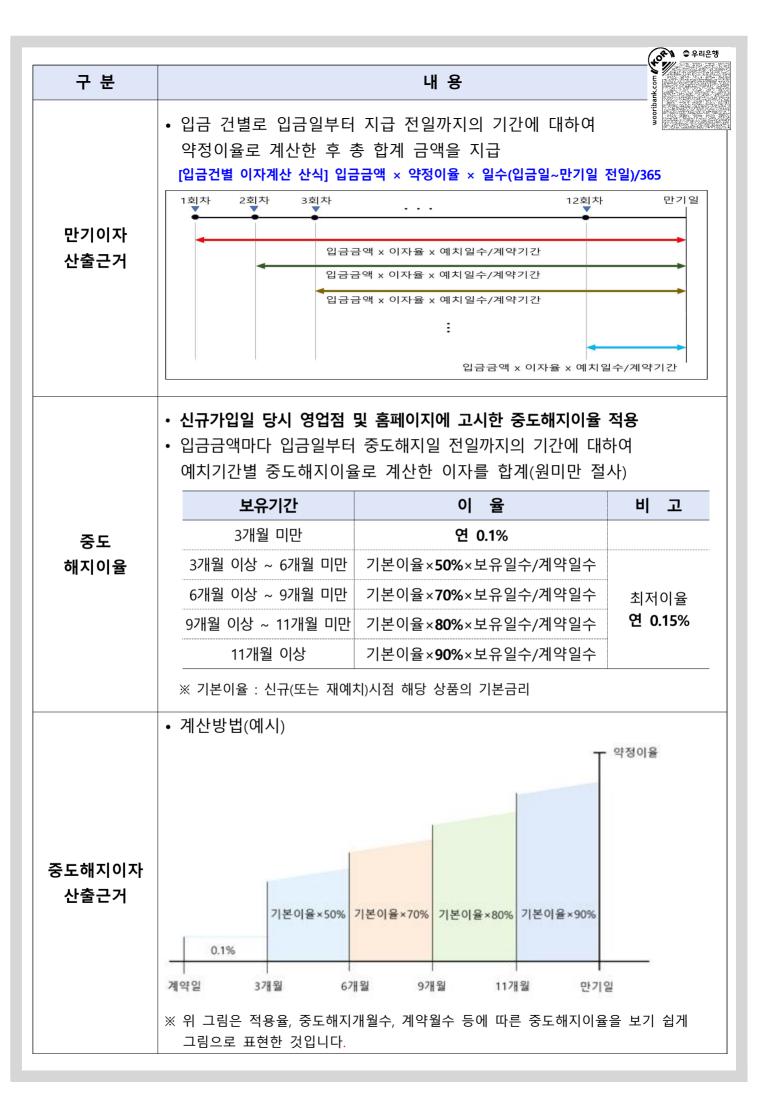
· 상품특징 : 50세이상 시니어세대가 29세이하 자녀세대에게 가입자격을 전달하는 컨셉의 적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u>실제 계약</u>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상품 가입코드를 보유한 29세 이하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스마트뱅킹 / 해지 : 영업점, 스마트뱅킹 ※ 단, 미성년자의 단독 예금해지는 불가하며, 미성년자 예금의 해지와 제신고는 모든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함		
가입금액	• 월 30만원 이하 (원 단위로 적립 가능)		
계약기간	• 12개월		
판매한도/기간	 선착순 10만좌 (한도 소진 시 별도 안내 없이 판매 자동 중단) 2025년 4월 30일 ~ 2025년 9월 30일 ※ 가입코드를 보유한 고객이라도 2025년 9월 30일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함 (판매기간 경과 시 가입코드 소멸) 		
적용이율 ('25.04.30 세금납부 전 기준)	• 적용이율 : 기본이율 + 우대이율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기본		

구 분	내	용 (E) 우리운행	
	• 아래의 우대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최	대 연 6.0%p의 우대금리 적용	
금리우대조건	① 계약 기간 중 총 6회 이상 당행 입출금 계좌에서 본 적금 계좌로 자동이체를 한 경우 (단, 월 1회의 자동이체만 인정) - 연 4.0%p ② 본 적금의 가입시점에 우리은행 정기예금 및 적금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연 1.0%p ③ 당행 스마트뱅킹을 통해 본 적금을 가입한 경우 - 연 1.0%p (「우리아이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해 가입한 경우도 포함함)		
	• 우대이율은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	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가입코드 발급조건	 우리은행은 본 적금의 가입코드 발급과 관련한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벤트 조건을 충족한 50세 이상의 고객에게만 가입코드를 제공함 가입코드 발급을 위한 자격 조건, 적용 방식, 발급 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당행 홈페이지및 스마트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가입 프로세스	 29세 이하의 고객은 가입코드를 보유한 50세 이상의 고객으로부터 가입코드를 전달 받아 본 적금을 가입할 수 있음 가입코드를 발급 또는 보유한 고객은 타인에게 해당 코드를 전달할 수 있으며 가입코드를 전달하는 고객과 가입코드를 전달받는 고객 사이의 관계는 은행에서 제한 및 확인하지 않음. 단, 가입코드를 전달하는 고객은 반드시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며, 이러한 동의 없이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될 수 있음 본 적금은 선착순으로 가입 가능하며 한도가 소진되었거나 판매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가입코드를 보유하였더라도 추가 가입이 불가함 (가입코드는 판매한도를 초과하여 발급될 수 있음)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적용세율	•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 14.0% + 지방소득세 1.4%) ※ 적용세율은 2025.04.30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중도인출	• 초입금을 제외한 지정 입금 건별로 만기해지 포함 최대 3회 중도인출 가능 (중도인출 건에 대해서 중도해지이율 적용)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이율 적용	
만기 후 이율	경과기간 만기후 1개월이내 만기후 1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만기후 6개월 초과 ※ 약정이율 : 만기(또는 재예치)시점 일반정	이율만기시점 약정이율 × 50%만기시점 약정이율 × 30%만기시점 약정이율 × 20%	



		(40⁶) ○ 우리은행	
구 분		내 용	
만기자동해지 서비스	• 신규일에 고객이 신청한 우리은행 입출금계좌로 만기해지 원리금이 자동 입금되는 서비스 • 고객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가입 이후에도 신청 및 변경 가능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자동이체	 고객이 원하는 날짜로 자동이체 등록 가능 다른 금융회사 입출금계좌에서도 가능하나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함 		
계약해지방법	• 영업점 및 스마트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예금자보호 여부	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	가능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만기 앞당김	불가능	• 해당사항 없음	
양도 및 상속	불가능	• 공동명의 가입 또는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 불가	
담보제공	가능	• 계좌잔액의 95%까지 가능	

3 유의 사항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등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라 ● 우리은행

-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 개인금융솔루션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우리은행 고객상담선탁(1588-5000) 또는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탁(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탁(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